

중남미

◆ 칠레, EU와 자유무역협정 타결

칠레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 시장다변화,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계 각국과 양자간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을 적극 추진해 왔다. 비록 미국 의회의 반대로 NAFTA의 가입에는 실패하였지만, 이미 캐나다, 멕시코, 에콰도르 등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와 FTA⁵⁾를 체결하였고, 지난 2002년 5월에 개최된 제2차 EU·중남미 정상회담에서는 EU와 정치·경제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제후협정⁶⁾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포도주와 수산물 부문이 최대의 쟁점

칠레와 EU간에 체결된 정치·경제 협력에 관한 제후협정은 협정의 구조에 관한 설명 및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밝힌 '정치분야',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전반적인 FTA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통상분야', 과학·기술 및 공동 연구에 관한 '협력분야'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동 협정의 통상분야는 칠레는 공산품에 대하여 7년 이내, EU는 3년 이내에 모든

〈표〉 칠레의 對EU 교역량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수 출	4,144	4,148	4,123	4,501	4,607
수 입	3,957	3,850	2,848	2,880	3,064
교 역 량	8,101	7,998	6,971	7,381	7,671

자료 : ProChile.

5) 칠레는 멕시코(1997년), 베네수엘라(1997년), 캐나다(1997년), 콜롬비아(1998년), 에콰도르(1998년), 페루(1998년)와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미국, 파나마, 볼리비아, 한국, 쿠바 등과 FTA 협상을 진행중임.

6) 칠레는 멕시코에 이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두 번째 국가가 됨.

수입관세를 철폐⁷⁾해야 하며, 농산물에 대하여는 양측이 10~12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국간의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포도주⁸⁾와 수산업에 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포도주에 관한 논란사항은 EU측의 의견이 반영되어 코냐, 샴페인, 포마르 등 유럽의 지명을 사용한 칠레산 포도주의 경우, 수출용은 5년 이후, 칠레 내수용은 12년 이후 전면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4년 또는 7년 이내에 EU측이 모든 관세를 철폐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외국인에 대해 49%의 지분소유만이 허용된 EU측(주로 스페인) 수산회사에 대해서는 100%까지 지분소유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동 협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세계 5위⁹⁾의 포도주 수출국인 칠레 포도주 업계는 코냐, 샴페인 등 수출용 포도주의 판매금지로 1990년대부터 계속 증가된 포도주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칠레

수산업계 역시 불명료한 어업조항¹⁰⁾으로 인해 유럽 다국적기업들의 칠레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EU측의 관세철폐가 4년 또는 7년으로 유예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FTA 체결, 경기회복과 투자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

이처럼 국내 여러 이익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칠레 정부는 EU와의 FTA 체결이 중남미 여타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의 S&P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치 상향조정¹¹⁾과 맞물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미국과의 FTA 타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崔 盛 圭】

7) 칠레의 주요 수출품이자 對EU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광산물(주로 구리)의 90%에 대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됨.
 8) 포도주에 관하여 양측은 4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상호간의 제조관행을 인정하며 Reserva, Late harvest, Gran Vino와 같은 전통적 표기도 인정하기로 합의함.
 9) 칠레의 세계 포도주 시장 점유율은 프랑스(40.8%), 이태리(17.6%), 스페인(9%), 호주(7.1%)에 이어 4.6%를 기록하고 있음.
 10) 동 협정은 경제수역에서의 어로활동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칠레 국기를 단 선박'(solo los barcos con bandera Chilena)이라는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합작투자 등을 통해 유럽 기업들의 칠레 경제수역 내 조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음.
 11) S&P는 2002년 4월, 칠레 정부의 재정정책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혁 노력을 들어 국가신용등급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함.